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4장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33호(방호장치의무안전인증 고시)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 동바리를 조립·사용·해체 작업 중발생할 수 있는 붕괴 및 근로자의 떨어짐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동바리를 조립·사용·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 - (가) "시스템 동바리"라 함은 <그림 1>과 같이 규격화·부품화된 수직재, 수평재, 가 새재 등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거푸집 동바리를 말한다.
 - (나) "U 헤드 잭"이라 함은 시스템 동바리의 수직재 상부에 설치하여 거푸집 널을 지지하는 멍에재를 받쳐주는 조절형 받침대를 말한다
 - (다) "받침철물(잭 베이스)"이라 함은 시스템 동바리의 수직재 하부에 설치하여 미 끄러짐이나 침하를 방지하고 동바리의 수직과 수평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절형 받침대를 말한다.